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견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된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,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전(안 제3조)
 - 가. 파주시 아동동 344-3번지에서 파주시 아동동 산31번지로 이전
-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6조)
 - 가. 청소관련 업무 운영
- 공단 직원의 정원을 증원함(안 제20조)
 - 가) 정규직 인력 44명을 89명으로 조정 (증 45명)
 - 일반직 : 1명(팀장 1명)
 - 기능직 : 44명(사무보조1명, 운전원 43명)
 - 나) 비정규직 인력 72명을 223명으로 조정
 - 환경미화원 : 증 171명
 - 주차관리원 : 감 20명

- “총무팀, 시설운영팀” 을 “행정지원팀, 주차관광팀, 환경운영팀”으로 명칭변경(안 제20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

제95조 (사무의 위임등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94·12·20>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

제5조 (정관)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8조 (권한의 위탁)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인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,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또한, 동 건과 관련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 제49회 임시회의시 기 동의를 득한 사항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다만, 공단 직원의 정원을 증·감함에 있어 정원의 증·감 사유가 되는 각종 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공단 직원의 정원이 현원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,
- 기 승인을 받은 위탁사업이라도 사업의 타당성결여 및 기타 사유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원을 조정하여 현원과의 차이가 발생치 않도록 인원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가) 변경전 정규직 정원/현원(44/31)

- 일반직 : 21/12(이사장 포함)
- 기능직 : 23/19

나) 변경전 비정규직 정원/현원(72/38)

- 청사관리원 : 5/3
- 주차관리원 : 62/32
- 도라전망대 : 1/1
- 분노및축산폐수관리원 : 4/2